의안번호 381

- 2008년도 제5차 -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

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

제출일자 : 2008. 9. 11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

I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완료로 형성된 자산에 대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53조,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 공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Ⅱ. 주요내용

◇ 출자 기본계획 및 자산액

가. 기본계획

- 출자 및 부채인계 기준일 : 2007. 12. 31
- 출자자산
 -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비(건설공사비+건설관리비)
 - 단, 운영시스템(BLT사업)은 상환 만기(2011년) 후 출자
- 출자자산 가액결정
 - 건설사업비 지출액을 적산,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한 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
- 부채인계
 - 도시철도 1호선에 직접투자를 위하여 발생한 부채액 중 출자기준일 현재 미상환 원리금('08년 원리금 상환시기 도래분은 시 예산으로 상환)

나. 출자자산액

○ 출자 자산액

구	분	출자 자산액(원)	자 산 내 역
7	ᅨ	1,598,790,614,494	
공유	-재산	113,045,845,710	토지, 건물, 지상권
기	타	1,485,744,768,784	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(공유재산 제외)

○ 부채인계액

구	분	계	도시철도채권	재특자금	비고
부채인계	액(원)	207,387,377,085	161,459,931,474	45,927,445,611	

Ⅲ. 그동안 추진상황

○ '07. 8~12월: 출자자산 가액 합동대사 및 확인

○ '08. 1~ 6월: 공인회계검증 및 자료 확인

○ '08. 6. 17 : 현물출자 및 부채 인계·인수 방침결정

○ '08. 8. 8 :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

- 수권자본금 상향 조정 : 1조원 ⇒ 2조 5천억원

○ '08. 9. 4 :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

IV. 앞으로 계획

○ '08. 10 :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 및 부채 인계·인수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

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도시철도특별회계 (단위 : m², 천주, 백만원)

	구 분		싱	- 반 :	7]		하 반	기		합	계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비포
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1	319,758	1,598,791	1	319,758	1,598,791	유가 증권
		토지										
취	1.매입	건물										
''		기타										
	2.교환	토지										
득	으로	건물	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1	319,758	1,598,791	1	319,758	1,598,791	유가 증권
		토지				41	320,715	44,942	41	320,715	44,942	
	계	건물				32	75,310	60,306	32	75,310	60,306	"
		기타						1,493,543			1,493,543	"
		토지										
처	4.매각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분	5.양여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6 7] E]	토지				41	320,715	44,942	41	320,715	44,942	출자
	6.기타 처분	건물				32	75,310	60,306	32	75,310	60,306	"
	, _	기타						1,493,543			1,493,543	"

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회계명 : 도시철도특별회계 (단위 : m², 천주,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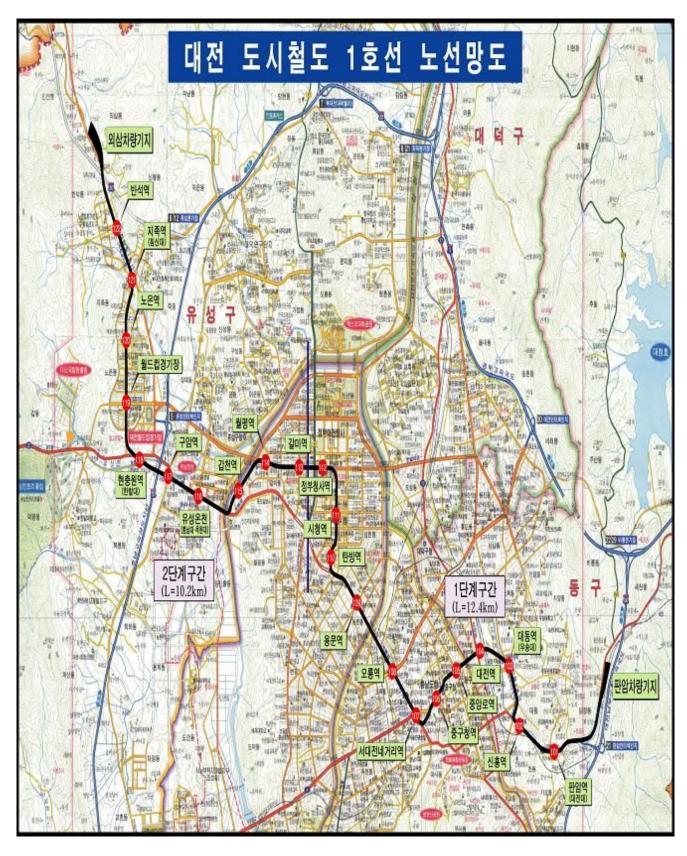
일련	재 산 표 시				ar a a	25.7.4		
번호	지목	소재지	수량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	
합계			319,758	1,598,791	2008. 10	출자	유가증권	
1			319,758	1,598,791	2008. 10	출자	유가증권	
		୍ର	하	여	백			

공유재산 처분(출자)대상 재산목록(7-4)

회계명 : 도시철도특별회계 (단위 : m², 천주, 백만원)

일련		재산의표시		처분대상	과표	처분	처분	매수희망자	
번호	구분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ب مایا		시기	사유	성 명	비고
함	계				1,598,791			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	
1	토지	동구 삼정동 36외 40필지	320,715.1	320,715.1	44,942	2008.10	출자	대전광역시 도시철도광	
2	건물	서구 월평동 160-20의 31동	75,310.2	75,310.2	60,306	2008.10	출자	대전광역시 도시철도광	
3	기타	대전시 일원			1,493,543	2008.10	출자	대전광역시 도시철도광	
			୦]	하	여	백			

도시철도1호선 현물출자 시유재산 위치도



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년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9월 12일

3. 상 정 일 자 :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8. 10. 2)
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국장 박 월 훈)

1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완료로 형성된 자산에 대하여 지 방공기업법 제53조,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전광역시도시 철도공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◇ 출자 기본계획 및 자산액

가. 기본계획

- 출자 및 부채인계 기준일 : 2007. 12. 31
- 출자자산
 -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비(건설공사비+건설관리비)
 - 단, 운영시스템(BLT사업)은 상환 만기(2011년) 후 출자
- 출자자산 가액결정
 - 건설사업비 지출액을 적산,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한 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
- 부채인계
 - 도시철도 1호선에 직접투자를 위하여 발생한 부채액 중 출자 기준일 현재 미상환 원리금('08년 원리금 상환시기 도래 분은 시 예산으로 상환)

나. 출자자산액

○ 출자 자산액

구	분	출자 자산액(원)	자 산 내 역
7]]	1,598,790,614,494	
공유	재산	113,045,845,710	토지, 건물, 지상권
기	타	1,485,744,768,784	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(공유재산 제외)

○ 부채인계액

구	분	계	도시철도채권	재특자금	비고
부채인7	계액(원)	207,387,377,085	161,459,931,474	45,927,445,611	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환구)

-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지난 2007. 4월 완료 됨에 따라 형성된 자산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 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8 조, 「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」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을 구하려는 것임.
- 도시철도 1호선 출자 및 부채인계 기준일은 2007. 12. 31일로 하고, 출자대상은 본선 및 차량기지 총연장 25.0451 킬로미터와 정거장 22개소, 외삼·판암차량기지 2개소, 도시철도 종합사령실 등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비로서,
- 출자자산 가액결정은 지난 2005. 12. 27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 부장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「도시철도 시 설물 등에 관한 인계·인수 협약서」 제7조에 의거 외부전문 공인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총 자산액 1조 5,987억 9,061만 4,494원과 부채인계액 2,073억 8,737만 7,085원임.
-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을 도시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시설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금회 현물 출자에서 제외된 자산인 운영시스템 BLT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료 상환이 만료되는 2011년까지 시설물에 대한

철저한 관리와 상환 후 추가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인계한 부채 중 대전광역시장이 2008년 말까지 상환할 부채는 상환후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 · 답변요지 : 생 략

V. 토 론 요 지:생 략

W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